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구 미 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2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2차)로 원안 가결되었으나 사업 추진 시 추가로 포함되어 조성된 인접토지를 반영하여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공원 이용 현황에 따라 매입하고자 함.

○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증축(치매전문병동 확충)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 치료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 방지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에 치매관리법령에 따른 치매전문병동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

《 당 초 》

- 위 치 : 구미시 신동 학서지 일원
- 대 상 : 토지 19필지 30,318㎡, 공원 52,826㎡(사용허가 22,508㎡)
-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
- 기준가격 : 16,678.4백만원
 - 토지 : 678.4백만원(공시지가) • 공원 : 16,000백만원(시설비)
- 사업내용 : 생태탐방로, 생태습지원, 수변전망대, 편의시설 등

《 변 경 》

- 위 치 : 구미시 신동 학서지 일원
- 대 상 : 토지 28필지 39,569㎡, 공원 55,980㎡(사용허가 16,411㎡)
- 사업기간 : 2013년 ~ 2021년
- 기준가격 : 18,334.6백만원
 - 토지 : 2,334.6백만원(공시지가)
 - 공원 : 16,000백만원(시설비)
- 사업내용 : 생태탐방로, 생태습지원, 수변전망대, 편의시설 등

《세부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위 치	구미시 신동 학서지 일원	구미시 신동 학서지 일원	
부지면적	30,318㎡	39,569㎡	증 9,251㎡
부지매입	63억원	99억원	증 36억원

□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증축(치매전문병동 확충)

- 위 치 :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 구미시 야은로 37-1(부곡동)
- 대 상 : 1,000㎡ 증축(부곡동 산 36-2번지 합필)
- 기준가격 : 2,940백만원
 - 건물 : 2,768백만원(건축비)
 - 장비 : 172백만원(장비보강)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
- 주요시설
 -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 집중 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원 확충
 - 치매환자 비약물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 확충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2건	40,569	12,592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1건	39,569	9,824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건	1,000	2,768
처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 재산 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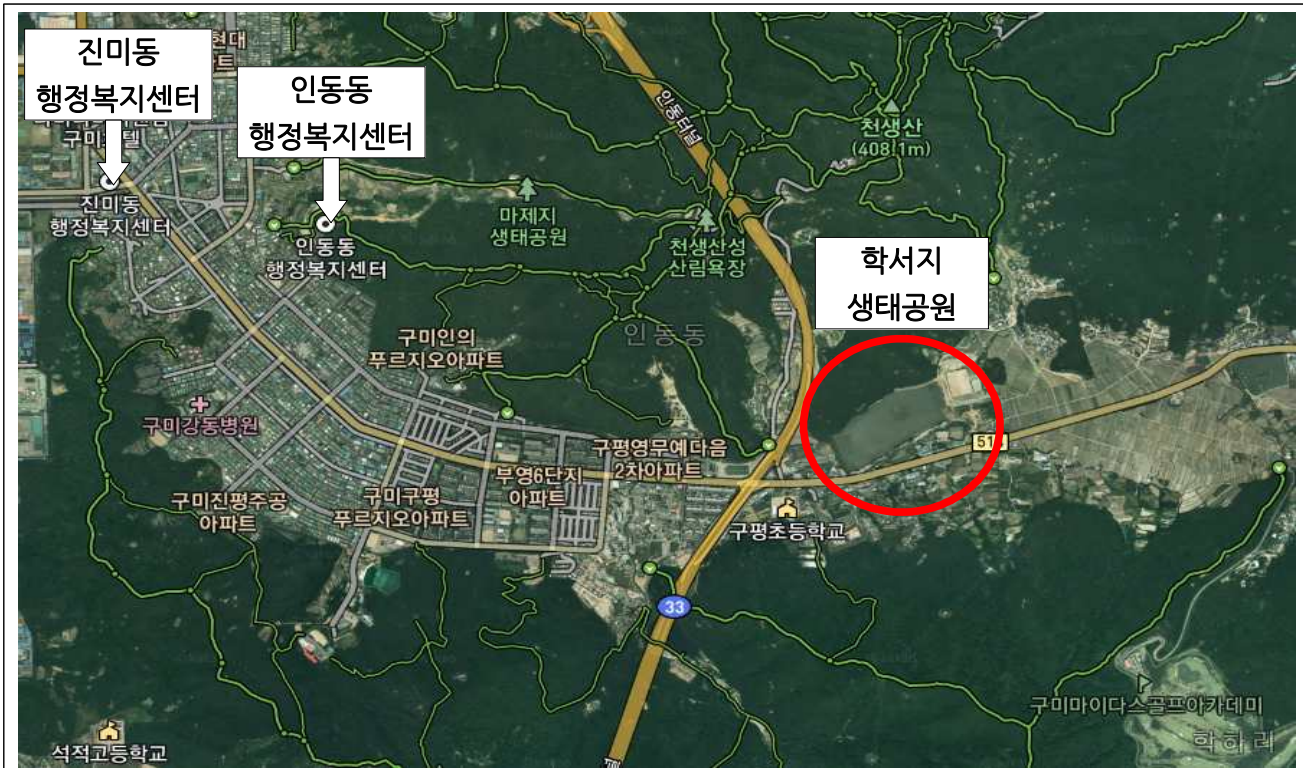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매각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총계			40,569	12,592				
취득	토지	구평동 95-3	4,386	1,754	2022년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한국 농어촌공사	당초
		구평동 96-3	3,567	2,497	"	"	"	"
		구평동 150-3	223	156	"	"	"	"
		구평동 151-6	545	218	"	"	"	"
		신동 616-3	1,095	153	"	"	"	"
		신동 616-4	4,877	717	"	"	"	"
		신동 616-5	427	60	"	"	"	"
		신동 622-2	726	102	"	"	"	"
		신동 643-2	132	18	"	"	"	"
		신동 647	8,667	1,335	"	"	"	"
		신동 652	466	72	"	"	"	"
		신동 659-1	945	236	"	"	"	"
		신동 616-2	399	56	"	"	"	면적 증가
		신동 622	1,615	226	"	"	"	"
		신동 647-2	3,102	478	"	"	"	"
		구평동 96-2	7	5	"	"	"	추가 매입
		구평동 880-1	445	156	"	"	"	"
		구평동 881-5	423	80	"	"	"	"
		구평동 882	432	151	"	"	"	"
		신동 614-1	120	17	"	"	"	"
		신동 616-1	4,020	1,005	"	"	"	"
		신동 647-7	140	22	"	"	"	"
		신동 705-21	460	51	"	"	"	"
		신동 705-48	67	7	"	"	"	"
		신동 705-49	533	59	"	"	"	"
		신동 705-53	141	16	"	"	"	"
		신동 705-54	1,592	175	"	"	"	"
		신동 720-1	17	2	"	"	"	"
	건물	부곡동 502-1외	1,000	2,768	2022년	구미시립노인 요양병원증축	구미시	증축

위 치 도

□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

○ 소재지 : 구미시 신동 학서지 일원



□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증축

○ 소재지 : 구미시 야은로 37-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 11. 생략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관부서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지 영 목
	담 당	김 은 화
	담 당 자	류 경 화 (480-5072)